

라 비용상에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서비스의 수가를 산정하는 데 참고할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방법: 2004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내용을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실태조사는 2002년 12월 이전 개원한 182개 시설을 대상으로 2004년 7월 26일~8월 24일간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의 내용은 입소노인규모를 비롯한 시설규모 및 타 시설과 복합여부, 세입·세출현황, 직원실태 및 인건비현황, 시설인력기준 및 인사관리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모두 141개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회귀분석모형은 투입요소의 가격 및 산출량 수준과 비용간의 관계를 기본적인 함수 형태로 하고, 그 밖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는 노인요양시설의 총비용(시설확장비 제외)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인 산출량에는 요양시설 입소 현재인원 사용하였으며, 투입요소의 가격을 나타내는 변수로 생활지도원(간병인) 평균임금 또는 간호사 평균임금을, 서비스의 질을 보정하기 위해 생활지도원 또는 간호사의 충족률을 사용하였다. 또한, 입소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였으며 전문시설 여부와 대도시 소재 여부를 포함하였다. 한편, 범위의 경계를 규명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복합시설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결과: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산출량 변수인 시설 입소 현재인원의 1차, 2차, 3차항의 계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호도 예상대로 양(+), 음(-), 양(+)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 규모의 경계가 존재하는 결과를 보였다. 투입요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생활지도원 또는 간호사 충족률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시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소자들의 중증도나 대도시 소재 여부 등은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합시설 여부는 예상과는 달리 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노인요양시설의 비용 추정 회귀모형으로부터 최적 규모를 산출한 결과, 입소 현재인원이 약 440명 수준일 때 비용이 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서비스의 질 등을 보정한 후에도 규모의 경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나, 범위의 경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때, 또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서비스 수가를 산정하고자 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kshpa-13

보도매체를 통해 살펴본 국내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실태

A Content Analysis of the Mass Media on Human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최영은¹⁾, 신영전¹⁾

1)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목적: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정신질

환자에게 있어 비인권적 차별, 낙인, 배제 등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정신장애우의 인권은 그 달성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이 얼마만큼 성숙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인권의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신질환자의 비인권 사례들은 보도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고, 특히 보도매체를 통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국내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종합일간지와 인터넷신문, TV뉴스 등의 보도매체 보도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방법: 1990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종합일간지, 인터넷신문, TV 뉴스로 나누어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에 관한 기사 총 106건(종합일간지 65건, 인터넷신문 30건, TV뉴스 11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2001년~2005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한 침해유형 자료와 2003년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1990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보도매체에 등장한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의 사건은 총 50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 중 종합일간지가 24건(48.0%)으로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었으며, 1999년 이후부터는 인터넷신문이 전체 보도의 43.9%를 차지하였고, TV뉴스는 22.2%였다. 인권 침해 주체로는 정신보건시설이 38.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국가나 개인 등 기타의 경우가 34.0%, 정신병원에 의한 경우는 28.0%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유형별로는 자유권 침해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존엄권(31.8%), 법적권리(13.6%), 평등권(9.1%)의 순이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월간지에서는 1990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를 18건 보도하였으며, 이 중 보도매체를 통해 보도되지 않은 사건은 8건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자유권과 존엄권 침해가 각각 41.9%, 38.7%로 가장 많았으며, 평등권 및 법적권리가 9.7%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정신과 관련 진정사건과 직권조사는 총 247건으로 나타났으며, 진정사건의 세부 진정내용 중 자유권 침해와 존엄권 침해가 각각 41.8%, 36.5%로 가장 많았으며, 법적권리(14.1%), 평등권(3.8%), 기타(3.8%) 순이었다. 전국 32개 정신과 관련시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입원의 강제성(63.2%)과 퇴소의 비원활(46.6%) 등의 자유권 침해와 직원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39.6%), 강박 증 폭력 경험(26%) 등의 존엄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도매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지 않았던 약물치료에 대한 안내, 의사의 치료적 태도 등의 법적권리 측면에 대해서 환자는 각각 42%, 15.6%가 불만족하고 있었고, 사생활 보장 등의 평등권 침해에 있어서도 24.8%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진정 건수에 비해 보도매체에서 보고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보도건수는 매우 적으며, 정신과 관련시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서와 같이 일상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매체에서는 자유권 및 존엄권 등 위주로 제한적으로만 보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및 치료환경 등의 전반에 걸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정책의 수립 시에도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